기 장 대 리 계 약

위임자(甲) 상호명: 제소에에(平)

등록번호 : 18011 - 1310 216

र दे मिर्धिका भी कुछ प, धेनान जिल्हें

대표자: 均分毫

수임자(乙) 법인명:세무법인 광원

등록번호 : 605-85-26326

주 소 : 부산시 진구 범천동 870-13번지 평광B/D 10층

전 화: 051-807-4694 팩 스: 051-807-4696

세무사:황인재

위 甲,乙 양자는 기장 대리를 위한 기장대리 계약서의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한다.

제1조(업무) 甲은 乙을 대리인으로 하여 甲의 위 표시사업장의 세무·회계 관련한 기장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.

제2조(보수) (1) 본 계약에 따른 기장대리의 보수는 <u>금 /06,000</u> 원정으로 (부가세별도)하고, 甲은 월정액은 매월 말일까지 자동이체로 지급키로 한다. 단 甲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때는 장부인수·인계하는 월까지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- (2) 본 계약이외의 결산서 작성 신고대리 등의 수수료는 전항의 보수와는 별도로 계약에 따라 甲이 부담한다.
- (3) 기장에 필요한 장부 및 사무용 소모품의 비용은 甲이 부담한다.

(년간 원정)

제3조(기간)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 년간으로 하고, 해지할 경우는 그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상호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의무) 본 계약의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·정확하게 乙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 乙은 甲이 제공한 자료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해약의 책임) (1) 甲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이후 발생하는 세무처리에 대하여 乙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(2) 乙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, 乙은 그 시점까지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甲과 乙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업무를 종결시키기로 한 다.

제7조(업무수행의 불능) (1) 甲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등의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, 乙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. 이러한 경우에도 甲은 월정액을 지불하여야 한다.

(2)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甲,乙 쌍방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제8조(기타)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甲과 乙이 상호 협력하여 결정한다.

※ 개인정보 신용조회에 동의합니다

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甲과 乙이 각각 1통씩 소지한다.

2020. 11. 12.

위임자 상 호: 에스에이에 다

대표이사: 49 상호

수임자 상 호: 세무법인 광원

대표 세무사: 황 인 지